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문화교류정책 총괄 조정 및 해외홍보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폐지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정원 59명(고위공무원 가급 1명, 고위공무원 나급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8명, 7급 7명, 8급 4명, 9급 5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던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장을 폐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위공무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여 활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외언론 보도 분석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 남부권 등 광역관광개발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출판분야 해외수출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국립국악원에 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5급 1명, 6급 2명),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2026년 1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해외문화홍보원 외신분석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외뉴스분석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외문화홍보원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환원(6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장의 분장사무를 지역문화정책관 소관에서 문화정책관 소관으로 변경하고,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장 폐지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17. ~ 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24호”를 “제16호까지, 제37호부터 제39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1조제3항제37호부터 제39호까지, 제41호”를 “제11조제3항제4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정책과·국어정책과·전통문화과·국제문화과·예술정책과·공연전통예술과·시각예술디자인과·예술인지원팀·지역문화정책과·문화기반과·도서관정책기획단·문화예술교육과를 두되, 문화정책과장·국제문화과장·예술정책과장·공연전통예술과장·지역문화정책과장·도서관정책기획단장 및 문화예술교육과장”을 “문화정책과·국어정책과·전통문화과·문화예술교육과·예술정책과·공연전통예술과·시각예술디자인과·예술인지원팀·지역문화정책과·문화기반과·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되, 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교육과장·예술정책과장·공연전통예술과장·지역문화정책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문화과장”을 “문화예술교육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을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 분야 대외원조”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4.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7.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
8.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9.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18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①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문화정책관·해외홍보정책관으로 하며, 국제문화정책관·해외홍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

으로 한다.

③ 국제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해외홍보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15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문화홍보정책실에 국제문화정책과·한류지원협력과·국제문화사업과·해외홍보기획과·해외홍보콘텐츠과·해외미디어협력과·해외뉴스분석팀을 두되, 국제문화정책과장·국제문화사업과장·해외홍보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홍보콘텐츠과장 및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해외뉴스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국제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5.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6.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7.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9.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10.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11.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재외 문화원 신설 및 확충

13.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평가의 계획·시행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한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한류 관련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3.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4. 한류 확산 관련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5. 한류 콘텐츠의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류 관련 산업 동반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9. 한류 관련 공연 및 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⑧ 국제문화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2.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3. 국내외 학술연구단체간 교류 지원
4.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조정
6.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7.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8. 재외 문화원 특화사업·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⑨ 해외홍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이하 이 조에서 “국가홍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국가홍보 관련 정부·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국가홍보 메시지의 개발 및 활용
4. 국가홍보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5. 국가이미지조사 등 국가홍보를 위한 글로벌 인식과 환경 분석
6. 국가홍보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 및 설명회 개최·지원
7.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가홍보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8.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
9. 한국 관련 정보 오류의 시정에 관한 대외협력
10. 국가홍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⑩ 해외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홍보 콘텐츠의 기획·개발
2.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사이

트 운영

3. 국가홍보에 관한 간행물·자료집·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
4. 한국 소개 자료의 해외 출판·제작 지원
5.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국가홍보 콘텐츠의 제작·배포 지원
6.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7. 국가홍보에 관한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국가홍보에 관한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9. 국내외 방송과 국가홍보 관련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 지원
10. 국가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⑪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 언론매체와의 홍보 협력 총괄
2. 해외 언론매체의 한국 관련 취재·보도활동 지원
3.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의 국내외 언론 취재 및 보도 활동 지원
4. 외신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중앙행정기관 외신대변인협의회 운영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에 관한 지원 및 협력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 관련 역량 강화 지원
8. 한국 및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해외 언론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9. 외국 언론인 등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 10.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언론 협력에 관한 지원
- 11.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국가홍보 사업 추진

⑫ 해외뉴스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한국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분석
- 2. 글로벌 이슈에 관한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분석
- 3.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분석
- 4. 해외 언론매체 분석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 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주재국 관련 보도 수집·분석 지원
- 6.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 7. 글로벌 온라인 매체의 자료 분석
- 8. 외국에서의 온라인 여론 분석
- 9. 정보통신기술 기반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

제10조제3항 중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산업정책과·영상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대중문화산업과 및 한류지원협력과”를 “문화산업정책과·영상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대중문화산업과”로, “서기관으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기획총괄과·도서관인재개발과”를 “운영

지원과·기획총괄과·디지털정보기획과·도서관인재개발과·정보기술기반과”로, “기획총괄과장”을 “기획총괄과장·디지털정보기획과장”으로, “국제교류홍보팀장”을 “정보기술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국제교류홍보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디지털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도서관 디지털서비스 발전계획의 수립
- 2. 국내·외 온라인 자료 공유 활동 협력 및 지원
- 3. 디지털도서관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
- 4.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 기획·운영
- 5. 소장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방·공유에 관한 사항
- 6.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 7. 도서관 데이터 발굴 및 신기술 융합 서비스 추진전략의 수립·시행
- 8. 차세대 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

⑦ 정보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2.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4. 통합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 5.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6.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의 연구·분석 및 기술 지원

- 7. 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운영
- 8. 전자결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30조제2항 중 “장서개발과·온라인자료과·국가서지과”를 “장서개발과·온라인자료과·국가서지과·지식정보서비스과”로, “국가서지과장”을 “국가서지과장 및 지식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이용서비스의 기획 및 운영
 - 2. 도서·디지털자료실 및 이용자 열람 공간 등의 운영 및 관리
 - 3.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 4. 도서관 이용자의 연구 및 이용서비스의 평가
 - 5.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 6. 사서 추천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 7. 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8. 도서관 소장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 앞에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을 삭제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중 “40명”을 “46명”으로, “2명, 5급 16명, 6급 16명, 7급 3명”을 “3명, 5급 18명, 6급 18명, 7급 4명”으로 한다.

제47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677”을 “739”로 하고, 일반직 계 “670”을 “73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1”을 “24”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1”을 “12”로 하며, 서기관 “23”을 “26”으로 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1”을 “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71”을 “183”으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77”을 “194”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1”을 “98”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4”를 “38”로 하며, 행정서기보 “10”을 “13”으로 하고, 운전서기보 “5”를 “6”으로 한다.

별표 1 중 사무운영서기보 “8”을 “9”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 정책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보 담당) 1”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보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순방지원 담당) 2”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가군(순방지원 담당) 2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외신논조분석 담당) 3”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가군(외신논조분석 담당) 3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자료발송 담당)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자료발송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순방행사취재 담당) 2”를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순방행사취재 담당) 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외신오류대응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84”를 “7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77”을 “73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1”을 “24”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1”을 “12”로 하며, 서기관 “23”을 “26”으로 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1”을 “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88”을 “201”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78”을 “194”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0”을 “87”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4”를 “38”로 하며, 행정서기보 “10”을 “13”으로 하고, 운전서기보 “5”를 “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사무운영서기보 “8”을 “9”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 정책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보 담당) 1”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보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순방지원 담당) 2”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가군(순방지원 담당) 2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외신논조분석 담당) 3”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가군(외신논조분석 담당) 3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자료발송 담당)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자료발송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순방행사취재 담당) 2”를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순방행사취재 담당) 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외신오류대응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3 공업서기보 3 다음에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농림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3의2 공업서기보 3 다음에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농림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6”을 각각 “305”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5”를 “4”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6”을 각각 “305”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5”를 “4”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6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1”을 각각 “162”로 하고, 학예연구사 “24”를 “25”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1”를 각각 “162”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24”를 “25”로 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4명),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을 “4명)”으로,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별표 7의2의 방송무대주사 1명으로 본다”를 “별표 7의2의 방송무대주사 1명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외뉴스분석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외뉴스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외뉴스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이 분장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7]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0조 관련)

1. 제5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시설사무관	1
2. 제50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공업주사	2
3. 제50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사	1

현행	개정안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② (생략)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47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 제16호까지, 제37호부터 제39호-----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7호부터 제39호까지,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 ----- 제11조제3항제41호----- ----- ----- -----.
⑥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정책과·국어정책과·전통문화과·국제문화과·예술정책과·공연전통예술과·시각예술디자인과·예술인지원팀·지역문화정책과·문화기반과·도서관정책기획단·문화예술교육과를 두되,	⑥ ----- 문화정책과·국어정책과·전통문화과·문화예술교육과·예술정책과·공연전통예술과·시각예술디자인과·예술인지원팀·지역문화정책과·문화기반과·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되, 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국제문화과장·예술정책과장·공연전통예술과장·지역문화정책과장·도서관정책기획단장 및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문화기반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전통문화과장 및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예술인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⑨ (생략)

⑩ 국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1의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 분야 전략 수립 및 조정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문화예술교육과장·예술정책과장·공연전통예술과장·지역문화정책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문화예술교육과장

1.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삭 제>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3.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
4.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추진

6.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7.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9.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10.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11. 한국 소개 문화행사의 계획 수립 및 지원

12.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⑪ ~ ⑰ (생략)

⑱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3.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

5.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

7.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

8.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9.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⑪ ~ ⑰ (현행과 같음)

<삭 제>

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전문인
력의 양성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
육 시스템의 구축

8.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기
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9.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①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밑
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문화정
책관·해외홍보정책관으로 하
며, 국제문화정책관·해외홍보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한다.

③ 국제문화정책관은 「문화체
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4
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
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
을 보좌한다.

④ 해외홍보정책관은 「문화체
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15호부터 제2
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
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
을 보좌한다.

⑤ 국제문화홍보정책실에 국제
문화정책과·한류지원협력과·
국제문화사업과·해외홍보기획
과·해외홍보콘텐츠과·해외미
디어협력과·해외뉴스분석팀을
두되, 국제문화정책과장·국제
문화사업과장·해외홍보기획과
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
로, 해외홍보콘텐츠과장 및 해
외미디어협력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으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
관으로, 해외뉴스분석팀장은 서
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
다.

⑥ 국제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의 수립·시행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
부기관과의 협력
5.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
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6.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7.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
문화교류업무 총괄
9.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
체의 운영
10.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11.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
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
의 수립 및 추진

12. 재외 문화원 신설 및 확충

13.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평가의 계획·시행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한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한류 관련 조사·연구 및 빅
데이터 구축
3.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4. 한류 확산 관련 관계기관 협
조체계 구축
5. 한류 콘텐츠의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류 관련 산업 동반성장 지
원에 관한 사항
7.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쌍방

향 문화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9. 한류 관련 공연 및 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⑧ 국제문화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2.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3. 국내외 학술연구단체간 교류 지원

4.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 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조정

6.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7.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8. 재외 문화원 특화사업·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⑨ 해외홍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

련 해외 홍보(이하 이 조에서 “국가홍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국가홍보 관련 정부·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국가홍보 메시지의 개발 및 활용

4. 국가홍보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5. 국가이미지조사 등 국가홍보를 위한 글로벌 인식과 환경 분석

6. 국가홍보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 및 설명회 개최·지원

7.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가홍보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8.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

9. 한국 관련 정보 오류의 시정에 관한 대외협력

10. 국가홍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⑩ 해외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홍보 콘텐츠의 기획·개

- 발
2.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사이트 운영
 3. 국가홍보에 관한 간행물·자료집·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
 4. 한국 소개 자료의 해외 출판·제작 지원
 5.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국가홍보 콘텐츠의 제작·배포 지원
 6.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7. 국가홍보에 관한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국가홍보에 관한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9. 국내외 방송과 국가홍보 관련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 지원
 10. 국가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 ⑪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 언론매체와의 홍보 협력 총괄
2. 해외 언론매체의 한국 관련 취재·보도활동 지원
3.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의 국내외 언론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4. 외신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중앙행정기관 외신대변인협의회 운영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에 관한 지원 및 협력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 관련 역량 강화 지원
8. 한국 및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해외 언론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9. 외국 언론인 등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10.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언론 협력에 관한 지원
11.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국가홍보 사업 추진

⑫ 해외뉴스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분석
2. 글로벌 이슈에 관한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분석
3.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분석
4. 해외 언론매체 분석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주재국 관련 보도 수집·분석 지원
6.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7. 글로벌 온라인 매체의 자료 분석
8. 외국에서의 온라인 여론 분석
9. 정보통신기술 기반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

제10조(국민소통실) ①·② (생략)

③ 소통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

제10조(국민소통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 ⑥ (생략)
- ⑦ 소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해외문화홍보원과 관련된 업무
 5. (생략)
 - ⑧ ~ ⑩ (생략)

제11조(콘텐츠정책국) ① (생략)

② 콘텐츠정책국에 문화산업정책과·영상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대중문화산업과 및 한류지원협력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 및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및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4호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콘텐츠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문화산업정책과·영상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대중문화산업과-----

----- 서기관 -----

③ ~ ⑥ (생략)

⑦ 한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한류 관련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3.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4. 한류 확산 관련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5. 한류 콘텐츠의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류 관련 산업 동반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9. 한류 관련 공연 및 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기획연수부) ① (생략)

② 기획연수부에 운영지원과·기획총괄과·도서관인재개발과

③ ~ ⑥ (현행과 같음)

<삭제>

제29조(기획연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운영지원과·기획총괄과·디지털정보기획과

및 국제교류홍보팀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 및 도서관인재개발과장은 서기관으로, 국제교류홍보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신설>

·도서관인재개발과·정보기술기반과-----
----- 기획총괄과장·디지털정보기획과장 -----
---- 정보기술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국제교류홍보팀장-----.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디지털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디지털서비스 발전계획의 수립
2. 국내·외 온라인 자료 공유 활동 협력 및 지원
3. 디지털도서관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
4.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 기획·운영
5. 소장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방·공유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7. 도서관 데이터 발굴 및 신기술 융합 서비스 추진전략의 수립·시행

의 개발 및 운영

8. 도서관 소장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삭 제>

⑥ (생 략)

제30조의2(지식정보운영부) ① 지식정보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식정보운영부에 디지털정보기획과·지식정보서비스과 및 정보기술기반과를 두며, 디지털정보기획과장·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서기관으로, 정보기술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디지털서비스 발전계획의 수립
2. 국내·외 온라인 자료 공유 활동 협력 및 지원
3. 디지털도서관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
4.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 기획·운영

5. 소장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방·공유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7. 도서관 데이터 발굴 및 신기술 융합 서비스 추진전략의 수립·시행

8. 차세대 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

9. 그 밖에 지식정보운영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이용서비스의 기획 및 운영
2. 도서·디지털자료실 및 이용자 열람 공간 등의 운영 및 관리
3.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4. 도서관 이용자의 연구 및 이용서비스의 평가
5.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

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서 추천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8. 도서관 소장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⑤ 정보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통합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5.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7.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의 연구·분석 및 기술 지원

8. 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이용

9. 전자결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

한 사항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삭 제>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① 해외

<삭 제>

문화홍보원장 및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해외문화홍보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해외문화홍보원에 기획운영과·해외문화홍보사업과·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외신협력과 및 외신분석팀을 두며, 기획운영과장 및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및 외신협력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외신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문화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2. 주요 계기 및 국정현안에 대

한 해외홍보계획 수립

3. 해외문화홍보 관련 정부·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4. 해외문화홍보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조사 및 평가
 5. 삭제
 6. 삭제
 7. 문화홍보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9. 보안 및 관인 관리
 10. 문서, 정보공개, 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12.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13.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4. 재외 문화원 신설 및 확충
 1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 평가의 계획·시행
 1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삭제
- ⑤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2.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3.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4. 삭제
 5. 국내외 학술연구단체간 교류 지원
 6.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 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7.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조정
 8.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9.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홍보 사업 추진
 10.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11. 재외 문화원 특화사업·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 ⑥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홍보용 정부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 한국관련 해외홍보자료 데이

터베이스 구축

3. 삭제

4. 해외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5. 해외홍보자료의 제작·배포

6. 한국소개자료의 해외 출판 지원

7. 재외공관의 홍보자료 제작 지원

8. 주요 국제행사의 한국소개자료 지원

9.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홍보 사업

10. 해외홍보용 영상자료의 제작 및 배포

11. 국내외 외국어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홍보

12. 국내외 방송과 해외홍보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지원

⑦ 외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언론의 한국 관련 취재 등에 대한 지원

2. 외국언론인 방한 초청

3. 상주 외신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등의 외신홍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5. 중앙행정기관 등의 외신홍보 관련 역량 강화 지원

6. 외신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대통령·국무총리의 정상외교 및 국민방한 행사 홍보 지원

8. 해외언론에 한국 관련 정보의 제공

⑧ 외신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 관련 외신 보도의 수집 및 분석

2. 한국 관련 외신 보도 중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3. 한국 관련 외신홍보 기획에 관한 사항

4.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5. 외신 관련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6. 해외 연구기관 정책자료 분석 및 활용 지원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신·구정원대비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77	741	+64
일반직 계	670	734	+64
고위공무원단	21	24	+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1	12	+1
서기관	23	26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1	43	+2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71	183	+12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77	194	+17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1	98	+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4	38	+4
행정서기보	10	13	+3
운전서기보	5	6	+1
사무운영서기보	8	9	+1

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보 담당)	<신 설>	1	+1
전문경력관 가군(순방지원 담당)	<신 설>	2	+2
전문경력관 가군(외신논조 분석 담당)	<신 설>	3	+3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자료 발송 담당)	<신 설>	1	+1
전문경력관 나군(순방행사 취재 담당)	<신 설>	2	+2
전문경력관 나군(외신오류 대응 담당)	<신 설>	1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84	748	+64
일반직 계	677	741	+64
고위공무원단	21	24	+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1	12	+1
서기관	23	26	+3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1	43	+2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 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 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88	201	+13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 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 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 사 또는 학예연구사	178	194	+16
.	.	.	.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 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 신주사보	80	87	+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4	38	+4
행정서기보	10	13	+3
.	.	.	.
.	.	.	.
운전서기보	5	6	+1
.	.	.	.
.	.	.	.
사무운영서기보	8	9	+1
.	.	.	.

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 보 담당)	<신 설>	1	+1
전문경력관 가군(순방지원 담당)	<신 설>	2	+2
전문경력관 가군(외신논조 분석 담당)	<신 설>	3	+3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자료 발송 담당)	<신 설>	1	+1
전문경력관 나군(순방행사 취재 담당)	<신 설>	2	+2
전문경력관 나군(외신오류 대응 담당)	<신 설>	1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06</u>	<u>305</u>	-1
일반직 계	<u>306</u>	<u>305</u>	-1
고위공무원단	<u>5</u>	<u>4</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06</u>	<u>305</u>	-1
일반직 계	<u>306</u>	<u>305</u>	-1
고위공무원단	<u>5</u>	<u>4</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61</u>	<u>162</u>	+1
일반직 계	<u>161</u>	<u>162</u>	+1
·	·	·	
·	·	·	
학예연구사	<u>24</u>	<u>25</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61</u>	<u>162</u>	+1
일반직 계	<u>161</u>	<u>162</u>	+1
·	·	·	
·	·	·	
학예연구사	<u>24</u>	<u>25</u>	+1
·	·	·	
·	·	·	